

세무회계저널
제15권 제3호 2014년 6월 pp.47~72
한국세무학회

기업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신승표** · 김희규***

<요 약>

기업의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됨에 따라 감사품질 및 회계정보의 질이 감소된다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과 아울러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의 사이의 지식전이로 인하여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질 및 세무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는 요인에 의하여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해봄으로써,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지배구조가 강한 기업일수록 그리고 세무 및 사업의 복잡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수준이나 지식전이 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기업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 의사결정이 이루어짐을 지지한다.

<주제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감사인의 독립성, 지식전이, 기업지배구조, 세무 및 사업의 복잡성

* 본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발간되었음.

**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smshin@inha.ac.kr, 032-860-7767, 주저자

*** 인하대학교 박사과정, 세무사, gom1148@gmail.com, 032-472-9100, 공동저자

I. 서 론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기업과 기업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한 문제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달성한다. 이처럼 회계감사를 통하여 기업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이다. 그런데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서비스 이외에 비감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되고 그에 따라 감사품질 및 회계정보의 질이 감소될 수 있다.¹⁾

비감사서비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세무서비스를 들 수 있다. 그런데 기업의 세무는 회계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에 따라 기업에게 세무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려면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이 보통이다.²⁾ 아울러 기업의 회계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는 것 역시 기업의 세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에 상당부분 의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세무상의 요인을 사전에 감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³⁾ 이렇게 볼 때 기업의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의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됨과 아울러 세무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에 근거할 때 감사인이 감사서비스와 함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감사인 독립성의 손상(impairment of auditor independence)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함과 아울러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knowledge spillover)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실증연구결과들은 이와 같은 예상이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질이 감소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경우가 있음과 아울러⁴⁾ 이와는 반대로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질 또는 세무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1) Enron을 비롯한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규제기관과 투자자 및 기타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감사인에게 지불되는 높은 비감사서비스 보수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감사보고서의 질과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Francis, 2006).

2) 예를 들어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은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을 가감하여 구하는데, 이때 어떤 세무조정을 얼마나 하여야 하는지는 가운데 발생한 거래에 대한 상세한 회계처리내용을 비롯하여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과 이해에 기초한다.

3) 예를 들어 재무상태표상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법인세의 세무조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감가상각비나 충당금 등과 같은 결산조정 항목들의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서 손금산입 여부가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사전에 감안하여야 한다.

4) 예를 들어 Krishnan et al.(2005), Gul et al.(2006), Cook et al.(2008), 김진배 외(2010)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우가 있음으로써⁵⁾ 실증결과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기존의 실증결과가 서로 상반되어 나타난 것은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에는 지식전이로 인하여 감사 품질과 세무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됨으로써 감사 품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가능하며, 그 결과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세무 서비스를 구매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것임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의 긍정적 효과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정적 효과가 적을수록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으로 하여금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도록 하는 요인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해봄으로써,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기업의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효과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어 나타난 기존연구의 실증결과들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입각하여 조망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로는 Omer et al.(2006), Lassila et al.(2010)과 이영한·윤성만(2011)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곤란한 상황이다.

Omer et al.(2006)은 2002년에 미국 기업들이 재임기간이 짧은 감사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세무서비스의 구매는 중단한 반면 재임기간이 긴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세무서비스의 구매는 유지함을 암시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Lassila et al.(2010)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기존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추론한 후, 미국에서 2002년 Sarbanes-Oxley Act의 시행을 전후하여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를 계속 유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영한·윤성만(2011)은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영한·윤성만(2011)의 연구는 Lassila et al.(2010)에서 제시된 바 있는 요인들을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Logistic 회귀분석을 함으로써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사회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실증한다. 둘째, 감사인이 Big4 감사인이거나 감사인의 재임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실증한다. 셋째,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실증한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가설로서 여기서는 본

5) 예를 들어 Seetharaman et al.(2011), Gleason and Mills(2011), Krishnan and Visvanathan(2011), 박홍조(2007), 이영한 외(2010), 박미영(2010), 김상현(2011), 박재환·김승준(2012)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구의 토대가 되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연구가설을 도출한다. 제Ⅲ장은 실증연구의 설계로서 여기서는 실증분석모형 및 변수측정과 연구대상기간 및 표본기업 등이 제시된다. 제Ⅳ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Ⅱ.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가설

1. 선행연구검토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에 관한 연구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각 유형별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첫째,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무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의 전이효과로 인하여 감사품질과 재무보고 품질이 개선될 것임을 제시한 국내외 실증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Seetharaman et al.(2011)은 Sarbanes-Oxley Act 이후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와 재무제표 재작성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는 세금과 관련한 재무제표 재작성의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Gleason and Mills(2011)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은 국제청과의 분쟁에 대비한 세금준비금(tax reserves)을 충분하게 설정하지만, 구매하지 않은 기업은 세금준비금의 추가적 적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Krishnan and Visvanathan(2011)은 손실회피 이익조정과 감사인에게 지급된 세무수수료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 김상현(2011)은 감사인이 세무조정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회계이익과 세무이익 사이의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에 관한 재무보고 공시의 품질이 제고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의 전이효과로 인하여 세무상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제시한 국내 실증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이영한 외(2010)은 유효법인세율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유지 및 해고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 및 유지는 유효법인세율과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가짐을 발견하였으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해고한 경우에는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박홍조(2007)는 감사인의 세무조정서비스 제공여부와 세무서비스 수수료의 수준이 법인세추납액에 음의 영향을 미침을 제시하고, 이러한 실증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조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무조정서비스가 보다 정확하게 된 데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셋째, 감사인이 세무조정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함을

제시한 국내 실증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박재환·김승준(2012)은 조세회피는 기업가치와 전반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지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조정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와 양의 관련성을 가짐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박미영(2012)은 감사인의 세무조정서비스 제공여부가 비정상감사보수와 조세회피 사이의 관련성 및 감사인 교체와 조세회피 사이의 관련성에 음의 조절효과를 지닌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부정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Krishnan et al.(2005)은 비감사서비스 수수료와 이익의 가치관련성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함으로써,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된 것으로 투자자들이 인식하는지 실증하였다. 그 결과 비감사 수수료율과 비감사 수수료의 수준이 이익의 가치관련성과 음의 관계를 가짐을 제시하고, 이는 감사인 제공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인식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Gul et al.(2006)도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은 이익의 가치관련성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non-Big6 감사인인 경우에는 이러한 불리한 영향이 더 크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Maydew and Shackelford(2005)는 Sarbanes-Oxley Act(SOX)의 시행과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및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의 규제에 의하여 감사인이 고객기업의 세금계획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역할에 변화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SOX 시행 이후에 고객기업에 대한 세무서비스가 크게 감소한 반면에 비감사 고객에 대한 세무서비스가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규제조치를 우려한 감사인과 고객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였음을 의미한다.

Cook et al.(2008)은 4분기에 유효법인세율의 변화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함으로써 목표이익에 도달하려는 기업의 행위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효법인세율의 변화를 이용한 이익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익예측치에 도달할 수 없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감사인에게 지급된 높은 수준의 세무수수료가 4분기에 유효법인세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 김진배 외(2010)은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의견과 취약점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감사인의 비감사 서비스 제공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비적정 의견 및 취약점 보고 건수와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고객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가 클수록 중대한 취약점 보고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였다.

다.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외적으로 극소수

에 불과한 상황이다. Omer et al.(2006)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변화하는 규제환경에서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00년과 2001년에는 세무서비스 수수료와 비기대 감사수수료 사이에 강한 양의 관련성이 있으나 2002년에는 이러한 양의 관련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실증결과에 대하여 재임기간이 짧은 감사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세무서비스의 구매는 중단한 반면, 재임기간이 긴 감사인에 의해 제공되는 세무서비스의 경우에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에 대한 규제기관의 압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계속 유지한 결과라고 언급하였다.

Lassila et al.(2010)은 Omer et al.(2006)의 연구를 확장 발전시켜 다양한 기존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세금과 사업의 복잡성(tax and operational complexity),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감사인 독립성(auditor independence)을 체계적인 논리에 입각하여 제시한 최초의 연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들은 Sarbanes-Oxley Act(2002)의 시행 전과 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를 연구대상기간으로 하여 기업이 이 기간 중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전반적으로 당초의 예상을 지지하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영한·윤성만(2011)은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한계세율과 경영자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채비율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2. 연구가설⁶⁾

가. 기업지배구조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⁷⁾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강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고 경영자의 이기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Larcker and Richardson

6) Lassila et al.(2010)은 Sarbanes-Oxley Act(SOX) 시행 전후인 2001년부터 2003년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하여 기존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는 SOX와 같은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다 넓은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함과 아울러 기존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업까지 모두 표본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Lassila et al.(2010)의 연구와 차이점이 있다.

7)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일치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s)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뜻한다. [김현동(2013)]

2004). 둘째, 강한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와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및 이로 인한 이해상충을 감소시킨다(Jensen and Meckling 1976 ; Fama and Jensen 1983 ; Baysinger and Hoskisson 1990). 셋째, 강한 기업지배구조는 감사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감사품질을 개선한다(Imhoff 2003 ; Cohen et al.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입각하여 Lassila et al.(2010)은 강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인 독립성 손상에 보다 덜 신경을 쓰면서 지식전이효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유인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리고 기업지배구조가 강한 기업일수록 기존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실증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기업지배구조가 강한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유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사회가 기업경영활동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사회 규모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지배구조가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장에서 언급한 점에 근거할 때 이사회 규모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1) 이사회 규모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

나. 감사인의 독립성과 지식전이능력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

앞서 제시한 바 있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의 감사인 독립성 손상에 대한 우려가 작을수록 그리고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에 따른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효과가 클수록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유인이 클 것임을 제시한다. 한편 국내외 기존연구들은 감사인의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독립성 수준이 높음에 따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인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적으며, 감사인의 책임기간이 길수록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 능력이 높을 것임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Teoh and Wong(1993)과 DeFond and Jambalvo(1993) 및 Fan and Wong(2005) 등은 감사인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비하여 큰 경우에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보다 높음에 따라 보다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Johnson et al.(2002)은 감사인 책임기간이 짧은 경우 비기대 발생액이 높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감사인의 책임기간이 긴 경우 감사인이 피감사기업에 대하여 보다 많은 지식을 보유함에 따라 감사품질이 높음을 반영한다(Geiger and Raghunandan, 2002 ; Gul et al., 2007). 국내에서 김상현(2011)은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재무보고 시점에서의 BTD(book-tax differences)와 세무보고 시점에서의 BTD 사이의 오차가 큼을 발견하고, 이는 감사인을 교체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로 인한 효익이 적음을 암시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에 근거할 때 감사인이 Big4 감사인인 기업일수록 감사인의 독립성 수준이 높음에 따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인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가 적고 그 결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감사인의 책임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 능력이 높고 그 결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에 근거하여 다음의 두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2) 감사인이 Big4 감사인인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

(연구가설3) 감사인의 책임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

다. 기업의 세무 및 사업의 복잡성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

Lassila et al.(2010)은 세무와 사업의 복잡성이 높은 기업은 기존에 구매하던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에 대한 근거로서 세무와 사업의 복잡성이 높은 기업에 있어서는 감사업무와 세무업무 사이의 지식전이효과가 클 것이고, 그 결과 당해 기업의 감사인이 다른 세무서비스 제공자보다 세무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고할 때 세무와 사업의 복잡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로 인한 감사인 독립성 손상의 우려보다는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 효과가 더 클 것임에 따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입각할 때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는 없는 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세무 및 사업의 복잡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미래의 사업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감안하여 이월결손금을 세무상 공제받는 일정을 사전에 면밀하게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조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월결손금은 영업성과의 변동성이 큰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며 따라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영업성과의 변동성에 기인한 영업위험이 높고 이에 따라 이러한 영업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상 복잡한 이슈가 존재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에 근거할 때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세무와 사업의 복잡성이 높음에 따라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 효과가 클 것이고 그 결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4)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

III. 실증연구의 설계

1. 실증분석모형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앞에서 제시한 바 있는 네 가지의 연구가설을 실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Logistic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한다.

$$AUDTX_{it} = \alpha + \beta_1 DIRSIZE_{it} + \beta_2 BIG4_{it} + \beta_3 AUDTEN_{it} + \beta_4 NOL_{it} + \beta_5 SIZE_{it} + \beta_6 LEV_{it} + \beta_7 NAS_{it} + \beta_8 MTB_{it} + \beta_9 ETR_{it} + \beta_{10} IND + \beta_{11} YD + \epsilon_{it}$$

위의 Logistic 회귀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인 AUDTX는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했는지 여부를 반영하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변수들 중에서 DIRSIZE(이사회의 규모), BIG4(감사인인 Big4 제휴법인인지 여부), AUDTEN(감사인 재임기간) 및 NOL(이월결손금 존재여부)은 각각 연구가설1, 연구가설2, 연구가설3 및 연구가설4를 검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며, 연구가설에 입각할 때 이들에 대한 Logistic 회귀계수는 모두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SIZE(기업규모), LEV(부채비율), NAS(세무서비스 이외의 비감사서비스 수준), MTB(주가—장부 가치 비율) 및 ETR(유효세율) 등은 DIRSIZE, BIG4, AUDTEN 및 NOL 이외의 요인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이들 각각에 대하여 통제변수로서 도입한 근거와 이에 따른 Logistic 회귀계수의 예상부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기업규모가 클수록 취급하는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해외영업의 비중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 효과가 클에 따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유인이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되며, 따라서 SIZE에 대한 Logistic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 ②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고이익을 높이려는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이 행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시장참가자들은 보다 높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론되며, 따라서 LEV에 대한 Logistic 회귀계수는 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 ③ 박재환·김승준(2012), 이세용·정형록(2005) 및 권수영 외(2004)은 감사인이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할 때 감사인으로부터 비감사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은 세무서비스 역시 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되며, 따라서 NAS에 대한 Logistic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 ④ 박재환·김승준(2012)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와 기업가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이를 참고할 때 MTB에 대한 Logistic 회귀계수는 양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ETR은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도입하였으며,⁸⁾ IND와 YD는 각각 산업효과와 연도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한 더미변수이다.⁹⁾

2. 변수의 측정

위의 Logistic 회귀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인 AUDTX와 이에 대한 설명변수들의 측정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측정

변 수	측정방법
AUDTX	해당 연도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아니면 0 ¹⁰⁾
DIRSIZE	연말 현재 이사 총수의 제곱근 ¹¹⁾
BIG4	해당 연도의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AUDTEN	해당 연도까지의 감사인 재임기간
NOL	연초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SIZE	연말 현재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LEV	연말 현재 (부채총액 / 자산총액)
NAS	해당 연도의 (비감사서비스수수료-세무서비스수수료) / 감사서비스수수료
MTB	연말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 / (주주지분의 장부가액)
ETR	해당 연도의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8) ETR에 대한 Logistic 회귀계수의 부호는 사전적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9)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농업·임업·어업·광업·음식료 및 담배/섬유·봉제·가방·신발/목재·펄프·종이·인쇄/석유정제·화학·고무·플라스틱·재생용 가공원료/비금속 제품/1차 금속·금속가공 제품/기계장비·컴퓨터·전기기계·전자부품·의료정밀·자동차·운송장비/가구·기타 제품/전기가스수도·하수폐수·폐기물 수집·환경정화/건설/도소매/서비스/기타의 13가지로 구분하였고 이에 따라 12개의 산업더미 변수를 도입하였다.

10)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여부는 기업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입수하였다.

11) 이사의 총수는 기업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입수하였다.

3. 연구대상기간 및 표본기업

본 연구의 연구대상기간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의 총 9개 연도로 하며, 표본기업은 다음에 제시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한다.

- ① 금융업 이외의 업종에 속한 유가증권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일 것
- ②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여부와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자료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업일 것
- ③ FnGuide의 DataGuide5.0에서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일 것

위의 세 가지 표본기업 요건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가증권 상장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한 사업보고서로부터 감사인, 감사수수료 및 비감사수수료, 세무서비스 제공여부 및 해당 세무서비스 수수료, 이사회 구성에 대한 자료를 일일이 직접 확인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12,563개의 기업·연 자료가 수집되었다.¹²⁾ 그 다음에 DataGuide5.0로부터 22,484개의 기업·연 재무데이터를 구하고 이를 앞서 언급한 12,563개의 기업·연 자료와 통합하였다.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금융업에 속한 1,236개의 기업·연 자료와 상장일 이전에 해당하는 5,372개의 기업·연 자료 및 2003년 이전에 해당하는 3,617개의 기업·연 자료를 제외하였고, 끝으로 주요 변수의 측정에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5,815개의 기업·연 자료를 추가로 제외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연 자료는 총 6,444개이며 이들의 분포를 몇 가지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를 살펴보면 전체 6,444개 기업·연의 15.86%에 해당하는 1,022개 기업·연에서 감사인과 세무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하다. 그리고 감사인과 세무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비율을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와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는 17.72%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14.05%로서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있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감사인 독립성 손상의 우려로 인한 비용이 클 것임을 암시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감사인과 세무서비스 제공자가 동일한 비율을 감사인이 Big4인 경우와 non-Big4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Big4 감사인인 경우는 18.82%이고 non-Big4 감사인인 경우는 10.79%로서 그 차이가 매우 크며,¹³⁾ 이러한 현상은 유가증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감사인이 Big4인 경우보다 non-Big4인 경우에 감사인 독립성 손상의

12) 이러한 과정에서 자료수집 작업에의 참여자들이 서로 cross-check 함으로써 수작업으로 인한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13) 이러한 비율의 차이에 대한 z-값은 9.0875로서 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우려로 인한 비용이 더 크거나 또는 지식전이효과가 더 작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표본기업의 분포

			세무서비스의 제공자				합계
			감사인		감사인 이외의 자		
전체표본			1,022	(15.86%)	5,422	(84.14%)	6,444
감사인 구분	Big4 감사인		766	(18.82%)	3,305	(81.18%)	4,071
	non－Big4 감사인		256	(10.79%)	2,117	(89.21%)	2,373
시장 구분	유가증권 상장기업	소 계	563	(17.72%)	2,615	(82.28%)	3,178
		Big4 감사인	468	(19.73%)	1,904	(80.27%)	2,372
		non－Big4 감사인	95	(11.79%)	711	(88.21%)	806
	코스닥 상장기업	소 계	459	(14.05%)	2,807	(85.95%)	3,266
		Big4 감사인	298	(17.54%)	1,401	(82.46%)	1,699
		non－Big4 감사인	161	(10.27%)	1,406	(89.73%)	1,567

IV. 실증분석결과

1.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표본으로 선정된 6,444개 기업·연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일부의 설명변수에서 극단치가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각 변수별로 상하 1% 수준에서 Winsorize 하였다. 그리하여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변수로서 본 연구에서 도입한 변수들의 간단한 기술통계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과 구매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제시함과 아울러, 이들 각 변수별로 두 집단 간의 평균 및 중위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연구가설 1과 관련한 설명변수인 DIRSIZE의 분포를 살펴보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의 경우가 구매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보다 평균과 중위수 모두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t-값과 z-값은 모두 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이는 기업지배구조가 강한 기업일수록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감사인 독립성 손상의 우려에 대하여 보다 덜 신경을 쓰면서 지식전이효과를 볼 수 있음을 반영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표 3〉 설명변수의 기술통계

변 수	① 세무서비스 구매 집단			② 세무서비스 비구매 집단			집단간 차이 (①-②)	
	평균	중앙값	표준오차	평균	중앙값	표준오차	t-값	z-값
DIRSIZE	2.346	2.236	0.015	2.264	2.000	0.006	5.17***	4.4112***
BIG4	0.750	1.000	0.014	0.610	1.000	0.007	9.27***	8.5083***
AUDTEN	4.092	4.000	0.076	3.655	3.000	0.031	5.31***	5.2473***
NOL	0.070	0.000	0.008	0.068	0.000	0.003	0.30	0.2997
SIZE	19.226	18.850	0.051	18.973	18.698	0.019	4.68***	3.3776***
LEV	0.368	0.363	0.006	0.388	0.388	0.002	-3.10***	-2.8979***
NAS	0.198	0.000	0.014	0.126	0.000	0.005	4.76***	8.3237***
MTB	1.360	1.014	0.035	1.227	0.900	0.014	3.49***	4.6779***
ETR	0.239	0.221	0.005	0.243	0.228	0.002	-0.94	-0.5380
관측치	1,022개			5,422개				

(주1)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DIRSIZE=연말 현재 이사 총수의 제곱근; BIG4=해당 연도의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AUDTEN=해당 연도까지의 감사인 재임기간; NOL=연초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SIZE=연말 현재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LEV=연말 현재 (부채총액/자산총액); NAS=해당 연도의 (비감사서비스수수료-세무서비스수수료)/감사서비스수수료; MTB=연말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주주지분의 장부가액); ETR=해당 연도의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주2) t-값은 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분석에 대한 검정통계량이며, z-값은 구매집단과 비구매집단 사이의 윌콕슨 순위합 검정(Wilcoxon rank sum test) 통계량임.

(주3) *, **, ***는 각각 유의수준이 10%, 5%, 1% 미만임을 의미함.

연구가설2 및 연구가설3과 관련한 설명변수인 BIG4 및 AUDTEN의 분포를 살펴보면, BIG4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의 경우가 구매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보다 평균이 더 크고, AUDTEN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의 경우가 구매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보다 평균과 중위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에 대한 t-값과 z-값은 모두 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 수준과 지식전이 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음을 반영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연구가설4와 관련한 설명변수인 NOL의 분포를 살펴보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과 구매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통제되지 않음에 기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NOL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다변량분석인 Logistic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로서 도입한 변수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SIZE와 MTB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의 경우가 구매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보다 평균과 중위수가 더 크고, NAS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의 경우가 구매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보다 평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t-값과 z-값은 모두 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LEV는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은 집단의 경우가 구매한 집단의 경우보다 평균과 중위수가 더 크며, 이러한 차이에 대한 t-값과 z-값은 모두 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 ETR은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과 구매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사이의 Pearson(Spearman) 상관계수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종속변수인 AUDTX(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여부 더미변수)와 본 연구의 가설 검정 대상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연구가설에서 예상한 바와 부합되도록 DIRSIZE, BIG4, AUDTEN 및 NOL은 각각 AUDTX와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상관계수의 유의수준은 NOL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AUDTX와 통제변수로서 도입한 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SIZE, NAS 및 MTB는 각각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AUDTX와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고, LEV는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AUDTX와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으며, ETR과 AUDTX 사이의 상관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앞서 <표 2>에서 각 변수별로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 집단과 구매하지 않은 집단 사이의 차이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종속변수인 AUDTX에 대한 설명변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상당수의 경우에서 유의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설명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설명변수별로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파악해본 결과 SIZE의 경우 1.84로 나타났고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는 모두 1.84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다중공선성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¹⁴⁾

14) 참고로 VIF 값이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보통이다.

〈표 4〉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

	AUDTX	DIRSIZE	BIG4	AUDTEN	NOL	SIZE	LEV	NAS	MTB	ETR
AUDTX	1	0.07104 ($<.0001$)	0.106 ($<.0001$)	0.06877 ($<.0001$)	0.00373 (0.7644)	0.06531 ($<.0001$)	-0.0386 (0.0019)	0.0669 ($<.0001$)	0.04557 (0.0003)	-0.01116 (0.3702)
DIRSIZE	0.05496 ($<.0001$)	1	0.23186 ($<.0001$)	-0.00316 (0.8001)	0.00866 (0.4869)	0.54751 ($<.0001$)	0.12846 ($<.0001$)	0.12765 ($<.0001$)	0.08673 ($<.0001$)	0.08913 ($<.0001$)
BIG4	0.106 ($<.0001$)	0.22147 ($<.0001$)	1	-0.00115 (0.9266)	-0.0191 (0.1253)	0.33505 ($<.0001$)	0.03878 (0.0018)	0.11691 ($<.0001$)	0.03939 (0.0016)	0.03304 (0.008)
AUDTEN	0.06537 ($<.0001$)	-0.0038 (0.7607)	0.01191 (0.339)	1	-0.05436 ($<.0001$)	-0.01649 (0.1858)	-0.0154 (0.2164)	-0.00064 (0.959)	0.02961 (0.0175)	-0.02648 (0.0335)
NOL	0.00373 (0.7644)	0.00902 (0.469)	-0.0191 (0.1253)	-0.06206 ($<.0001$)	1	-0.04901 ($<.0001$)	0.14513 ($<.0001$)	-0.0215 (0.0844)	0.07163 ($<.0001$)	0.0556 ($<.0001$)
SIZE	0.04208 (0.0007)	0.47565 ($<.0001$)	0.32729 ($<.0001$)	-0.00665 (0.5935)	-0.05269 ($<.0001$)	1	0.28768 ($<.0001$)	0.17921 ($<.0001$)	0.0665 ($<.0001$)	0.07996 ($<.0001$)
LEV	-0.0361 (0.0037)	0.1103 ($<.0001$)	0.04163 (0.0008)	-0.01201 (0.3352)	0.13109 ($<.0001$)	0.29123 ($<.0001$)	1	0.04348 (0.0005)	0.04992 ($<.0001$)	0.14322 ($<.0001$)
NAS	0.1037 ($<.0001$)	0.17526 ($<.0001$)	0.14453 ($<.0001$)	0.02947 (0.018)	-0.03341 (0.0073)	0.21406 ($<.0001$)	0.06266 ($<.0001$)	1	0.10297 ($<.0001$)	-0.00432 (0.7286)
MTB	0.05828 ($<.0001$)	0.0626 ($<.0001$)	0.02942 (0.0182)	0.02511 (0.0438)	0.04535 (0.0003)	-0.00815 (0.5129)	0.01149 (0.3563)	0.11993 ($<.0001$)	1	-0.0593 ($<.0001$)
ETR	-0.0067 (0.5906)	0.15225 ($<.0001$)	0.05975 ($<.0001$)	-0.03923 (0.0016)	-0.00295 (0.8129)	0.16865 ($<.0001$)	0.13444 ($<.0001$)	0.0037 (0.7664)	-0.0958 ($<.0001$)	1

(주1) 변수의 측정은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음.

(주2) 오른 쪽 상단은 피어슨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왼쪽 하단은 스피어만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괄호 속의 수치는 상관계수에 대한 p값을 의미함.

3.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가설검정을 위한 Logistic 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모형1, 모형2, 모형3 및 모형4는 각각 연구가설1, 연구가설2, 연구가설3 및 연구가설4를 따로따로 검정한 경우를 의미하고, 모형5는 연구가설1, 연구가설2, 연구가설3 및 연구가설4 모두를 함께 검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모형1부터 모형5까지의 다섯 가지 경우에 대하여 우도비 검정 χ^2 값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1% 미만에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이 양호함을 보이고 있다.

〈표 5〉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AUDTX_{it} = \alpha + \beta_1 DIRSIZE_{it} + \beta_2 BIG4_{it} + \beta_3 AUDTEN_{it} + \beta_4 NOL_{it} + \beta_5 SIZE_{it} + \beta_6 LEV_{it} + \beta_7 NAS_{it} + \beta_8 MTB_{it} + \beta_9 ETR_{it} + \beta_{10} IND + \beta_{11} YD + \epsilon_{it}$$

변 수 (회귀계수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4.291	-8.588	-3.803	-7.522***	-4.862	-9.706***	-4.593	-9.279***	-4.009	-7.721***
DIRSIZE	(+)	0.284							0.258	2.600***
BIG4	(+)		0.575	6.719***					0.578	6.733***
AUDTEN	(+)				0.075	5.047***			0.078	5.220***
NOL	(+)						0.237	1.703**	0.244	1.738**
SIZE	(+)	0.120	3.987***	0.106	3.919***	0.167	6.523***	0.171	6.660***	2.149**
LEV	(-)	-1.141	-5.456***	-1.067	-5.063***	-1.163	-5.557***	-1.217	-5.771***	-5.117***
NAS	(+)	0.288	3.639***	0.254	3.202***	0.288	3.627***	0.298	3.762**	3.053***
MTB	(+)	0.069	2.120**	0.069	2.098**	0.074	2.267**	0.072	2.209**	1.770**
ETR	(?)	-0.097	-0.398	-0.082	-0.337	-0.040	-0.166	-0.088	-0.363	-0.385
IND & YD	포 합									
관측치	6,444개									
우도비 검정 χ^2 값	198.8049***	237.3999***	215.7893***	193.4313***	273.8659***					

(주1)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AUDTX=해당 연도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아니면 0 ; DIRSIZE=연말 현재 이사 총수의 제공근 ; BIG4=해당 연도의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 AUDTEN=해당 연도까지의 감사인 재임기간 ; NOL=연초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 SIZE=연말 현재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 LEV=연말 현재 (부채총액/자산총액) ; NAS=해당 연도의 (비감사서비스수료-세무서비스수료)/감사서비스수료 ; MTB=연말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주주분의 장부가액) ; ETR=해당 연도의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이 10%, 5%, 1% 미만임을 의미함.

연구가설 1과 관련한 설명변수인 DIRSIZE에 대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당초의 예상과 부합하게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사회의 규모가 클수록 기업지배구조가 강함에 따라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더라도 감사인 독립성 손상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부터 연구가설 1이 채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연구가설 2와 관련한 설명변수인 BIG4에 대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당초의 예상과 부합하게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인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더라도 감사인 독립성 손상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부터 연구가설 2가 채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연구가설 3과 관련한 설명변수인 AUDTEN에 대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당초의 예상과 부합하게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감사인의 재임 기간이 길수록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효과가 큼에 따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부터 연구가설 3이 채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연구가설 4와 관련한 설명변수인 NOL에 대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당초의 예상과 부합하게 5%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세무와 사업의 복잡성이 높아서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효과를 보려는 유인이 많음에 따라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부터 연구가설 4가 채택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끝으로 통제변수로서 도입한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당초 예상한대로 SIZE, NAS 및 MTB에 대한 회귀계수는 각각 유의한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LEV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ETR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은 음수를 보이고 있다.

4.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구분한 추가분석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표 2>를 살펴보면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에 비하여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비율이 더 높으며, 이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약할 것으로 추정되는 코스닥 상장기업에 있어서는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감사인 독립성 손상의 우려로 인한 비용이 클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전체표본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두 가지 하위표본으로 나누고 이러한 두 가지 하위표본별로 Logistic 회귀분석을 추가로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Logistic 회귀분석 결과를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으로 구분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AUDTX_{it} = \alpha + \beta_1 DIRSIZE_{it} + \beta_2 BIG4_{it} + \beta_3 AUDTEN_{it} + \beta_4 NOL_{it} + \beta_5 SIZE_{it} + \beta_6 LEV_{it} + \beta_7 NAS_{it} + \beta_8 MTB_{it} + \beta_9 ETR_{it} + \beta_{10} IND + \beta_{11} YD + \epsilon_{it}$$

변 수 (회귀계수의 예상부호)		유가증권 상장기업		코스닥 상장기업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	-4.9818	-6.5853***	1.0640	0.7973
DIRSIZE	(+)	0.1731	1.3502**	0.2076	1.2612*
BIG4	(+)	0.4880	3.6472***	0.5406	4.6805***
AUDTEN	(+)	0.1061	4.9349***	0.0613	2.8249***
NOL	(+)	0.2400	1.2239*	0.0959	0.4649
SIZE	(+)	0.1044	2.4507***	-0.1834	-2.3604***
LEV	(-)	-0.9300	-3.0897***	-1.1902	-3.6633***
NAS	(+)	0.0558	0.5225	0.5416	4.2950***
MTB	(+)	0.0215	0.4087	0.1294	2.8502***
ETR	(?)	-0.1949	-0.5821	-0.1860	-0.5054
IND & YD		포 합			
관측치		3,178개		3,266개	
우도비 검정 χ^2 값		179.6956***		182.2064***	

(주1)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AUDTX=해당 연도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아니면 0 ; DIRSIZE=연말 현재 이사 총수의 제공근 ; BIG4=해당 연도의 감사인이 Big4 제휴법인이면 1, 아니면 0 ; AUDTEN=해당 연도까지의 감사인 재임기간 ; NOL=연초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 SIZE=연말 현재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 LEV=연말 현재 (부채총액/자산총액) ; NAS=해당 연도의 (비감사서비스 수수료-세무서비스수수료)/감사서비스수수료 ; MTB=연말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주주지분의 장부가액) ; ETR=해당 연도의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이 10%, 5%, 1% 미만임을 의미함.

<표 6>을 살펴보면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회귀계수의 부호와 모형의 설명력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DIRSIZE와 BIG4 및 AUDTEN에 대한 회귀계수는 모두 양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NOL에 대한 회귀계수도 양수이며 유가증권 상

장기기업의 경우에는 유의수준이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통제변수로서 도입한 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의 부호 역시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모두 전반적으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SIZE(기업규모)에 대한 회귀계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는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양수인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세무 및 사업의 복잡성이 높음에 따른 지식전이효과 크게 작용하는 반면,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으면서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함에 따라 기업규모가 클수록 지식전이효과가 작용하기 보다는 감사인 독립성 손상의 우려가 보다 많이 작용한데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⁵⁾

5. Big4 감사인 여부에 따른 하위표본에 대한 추가분석

<표 5>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BIG4에 대한 회귀계수의 유의성이 다른 변수들에 대한 회귀계수의 유의성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감사인이 Big4인지 여부에 따라 감사인 독립성 수준이 상당부분 결정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표 4>를 살펴보면 BIG4가 상당히 많은 다른 설명변수들과 1% 미만의 유의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BIG4를 설명변수에서 제거하더라도 다른 설명변수들에 대한 실증결과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전체 표본기업을 감사인이 Big4인 기업집단(BIG4=1인 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기업집단(BIG4=0인 기업집단)의 두 가지 하위표본으로 나누고 이러한 두 가지 하위표본별로 Logistic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먼저 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표 5>에서의 분석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설명변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귀계수들의 부호가 당초에 예상한 바와 일치하고 있으며, DIRSIZE와 AUDTEN에 대한 회귀계수의 경우에는 유의수준이 1% 미만이고 NOL에 대한 회귀계수의 경우에는 유의수준이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non-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다.

15) 참고로 유가증권 상장기업 집단과 코스닥 상장기업 집단별로 기업지배구조를 반영하는 DIRSIZE의 평균 중위수는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이 2.4357과 2.4495인 반면에, 코스닥 상장기업은 2.1232와 2.0000이고 이들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1% 미만에서 유의적이다(t -값 32.12, z -값 29.3866).

〈표 7〉 Big4 감사인 여부에 따른 하위표본에 대한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AUDTX_{it} = \alpha + \beta_1 DIRSIZE_{it} + \beta_2 AUDTEN_{it} + \beta_3 NOL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NAS_{it} + \beta_7 MTB_{it} + \beta_8 ETR_{it} + \beta_9 IND + \beta_{10} YD + \epsilon_{it}$$

변 수 (회귀계수의 예상부호)		Big4 감사인		non-Big4 감사인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	-3.6192	-6.4977***	-0.6445	-0.3914
DIRSIZE	(+)	0.3050	2.7256***	-0.0358	-0.1623
AUDTEN	(+)	0.0756	4.1768***	0.0862	3.0786***
NOL	(+)	0.3062	1.8490**	0.0426	0.1567
SIZE	(+)	0.0719	2.1399***	-0.0893	-0.9470
LEV	(-)	-1.0819	-4.2528***	-1.0398	-2.5523***
NAS	(+)	0.2673	3.0938***	0.1201	0.5006
MTB	(+)	0.0456	1.1906*	0.0736	1.0888
ETR	(?)	-0.0030	-0.0107	-0.2326	-0.4796
IND & YD		포 합			
관측치		4,071개		2,373개	
우도비 검정 χ^2 값		171.6463***		77.4294***	

(주1)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AUDTX=해당 연도에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였으면 1, 아니면 0 ; DIRSIZE=연말 현재 이사 총수의 제공근 ; AUDTEN=해당 연도까지의 감사인 재임기간 ; NOL=연초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1, 아니면 0 ; SIZE=연말 현재 자산총액의 자연로그 값 ; LEV=연말 현재 (부채총액/자산총액) ; NAS=해당 연도의 (비감사서비스수수료-세무서비스수수료)/감사서비스수수료 ; MTB=연말 현재 (주식의 시가총액)/(주주지분의 장부가액) ; ETR=해당 연도의 (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주2) *, **, ***는 각각 유의수준이 10%, 5%, 1% 미만임을 의미함.

첫째, 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DIRSIZE에 대한 회귀계수가 예상과 부합하게 유의적인 양수인 것과 달리, non-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DIRSIZE에 대한 회귀계수가 음수이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기업규모 및 이에 따른 이사회 규모가 전반적으로 큼에 따라 이사회 규모가 기업지배구조를 잘 반영하는 반면, non-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기업규모 및 이에 따른 이사회 규모가 전반적으로 작음에 따라 이사회 규모가 기업지배구조를 그다지 잘 반영하지 않음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둘째, 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NOL에 대한 회귀계수가 예상과 부합하게 유의적

인 양수인 것과 달리, non-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NOL에 대한 회귀계수가 양수이지만 그다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DIRSIZE에 대한 회귀계수와 관련하여 언급한 것처럼 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 비하여 non-Big4 감사인인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음에 따라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효과를 도모할 유인이 작음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

V. 결 론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행해지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인의 독립성이다. 한편 기업의 감사인은 감사서비스 이외에 세무서비스도 동시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의 경제적 유착 등으로 인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이 손상되고 그에 따라 감사품질 및 회계정보의 질이 감소될 수 있다. 반면에 기업의 세무는 회계와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 결과 기업의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의 사이의 지식전이로 인하여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질이 향상됨과 아울러 세무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도 있다.

요컨대 감사인이 감사서비스와 함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감사인 독립성의 손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함께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과 부합하게 기존연구들은 기업의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질이 감소된다는 실증결과와 함께 감사품질과 회계정보의 질 또는 세무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는 상반된 실증결과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실증결과가 서로 상반되어 나타난 것은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에는 지식전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감사인 독립성 손상에 대한 우려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발생가능하며, 그 결과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될 것임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의 긍정적 효과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정적 효과가 적을수록 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구매할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실증연구를 수행해봄으로써,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발생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를 다룬 국내외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상장기업과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이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Logistic 회귀분석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이사회 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고, 감사인이 Big4 감사인이거나 감사인의 재임기간이 긴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며,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기업지배구조가 강한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수준이나 지식전이 능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하며, 세무 및 사업의 복잡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에는 감사서비스와 세무서비스 사이의 지식전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감사인 독립성 손상이라는 부정적 효과도 발생하며, 따라서 기업은 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함으로써 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를 구매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것임을 지지한다.

참고문헌

- 권수영 · 손성규 · 이은철. 2003. “비감사서비스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2호 : 251-280.
- 김상현. 2011. “동일감사인에 의한 세무조정업무의 수행이 법인세관련 공시품질을 제고하는가?”. 회계와감사연구 제53권 제2호 : 79-106.
- 김진배 · 정석우 · 양대천 · 오광욱. 2010. “비감사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경제적 의존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및 취약점보고에 미친 영향”. 회계저널 제19권 제4호 : 263-299.
- 김현동. 2013. “기업지배구조와 세법”.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2호 : 81-110.
- 박미영. 2012.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91-219.
- 박재환 · 김승준. 2012.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조세회피행위를 통하여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 253-283.
- 박홍조. 2007.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세무서비스제공 및 세무관련 서비스보수가 법인세추납액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감사연구 제45권 : 161-185.
- 이세용 · 정형록. 2005. “비감사서비스와 감사인의 독립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감사보수, 비감사보수 및 재량적 발생액 사이의 내생성(endogeneity)과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한 분석”.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4호 : 99-127.
- 이영한 · 윤성만. 2011. “조세유인과 비조세유인이 기업의 외부감사인 제공 세무서비스 구매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6권 제2호 : 185-219.
- 이영한 · 윤성만 · 허 원 · 최원석. 2010. “감사인의 세무서비스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28권 제4호 : 197-222.
- Baysinger, B., and R. Hoskisson. 1990. The Composition of Boards of Directors and Strategic Control Effects on Corporate Strateg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 (1) : 72-87.
- Cohen, J., G. Krishnamoorthy, and A. Wright. 2002.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udit Proc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 (4) : 573-594.
- Cook, K., G. Huston, and T. Omer. 2008. Earnings Management Through Effective Tax Rates : The Effects of Tax Planning Investment and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 (2) : 447-471.
- Defond, M., and J. Jiambalvo. 1993. Factors Related to Auditor-Client Disagreements Over Income-Increasing Accounting Method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9 (2) : 415-431.
- Fama, E., and M. Jensen. 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26 (2) : 301-325.
- Fan, J., and T. Wong. 2005. Do External Auditors Perform a Corporate Governance Role in Emerging Market? Evidence from East Asia.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3 (1) : 35

—72.

- Francis, J.R. 2006. Are Auditors Compromised by Non-audit Service? Assessing the Evidence.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3 (3) : 747–760.
- Geiger, M., and K. Raghunandan. 2002. Auditor Tenure and Auditor Reporting Failur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1 (1) : 67–78.
- Gleason, C., and L. Mills. 2011. Do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Improve the Estimate of Tax Reserve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8 (5) : 1484–1509.
- Gul, F., B. Jaggi, and G. Krishnan. 2007. Auditor Independence : Evidence on the Joint Effects of Auditor Tenure and Non-audit Fee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26 (2) : 117–142.
- Gul, F., J. Tsui, and D. Dhaliwal. 2006. Non-audit Services, Auditor Quality, and the Value Relevance of Earnings. *Accounting and Finance* 46 (5) : 797–817.
- Imhoff, E. 2003. Accounting Quality, Audi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Accounting Horizons* 17 : 117–128.
- Jensen, M., and W. Meckling. 1976. Theory of the Firm :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4) : 305–360.
- Johnson, E., I. Khurana, and K. Reynolds. 2002. Audit-firm Tenure and the Quality of Financial Report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 (4) : 637–660.
- Krishnan, G., and G. Visvanathan. 2011. Is There an Association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3 (2) : 111–135.
- Krishnan, J., H. Sami, and Y. Zhang. 2005. Does the Provision of Non-audit Services Affect Investor Perceptions of Auditor Independence?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4 (2) : 111–135.
- Larcker, D., and S. Richardson. 2004. Fees Paid to Audit Firms, Accrual Choices, and Corporate Governa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 (3) : 625–58.
- Lassila, D., T. Omer, M. Shelley, and M. Smit. 2010. Do Complexity, Governance, and Auditor Independence Influence Whether Firms Retain Their Auditors for Tax Services?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32 (1) : 1–23.
- Maydew, E., and D. Shackelford. 2005. The Changing Role of Auditors in Corporate Tax Planning. Working Pape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Omer, T., J. Bedard, and D. Falsetta. 2006.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 The Effects of a Changing Regulatory Environment. *The Accounting Review* 81 (5) : 1095–1117.
- Seetharaman, A., Y. Sun, and W. Wang. 2011. Tax-Related Financial Statement Restatements

and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Journal of Accounting, Auditing & Finance* 26 (4) : 677-698.

Teoh, S., and T. Wong. 1993. Perceived Auditor Quality and th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The Accounting Review* 68 (2) : 346-366.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Firms' Purchase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Seung-Myo Shin* · Heuikyu Kim**

— <Abstract> —

When a firm's auditor provides tax services to the firm, there can be negative effect of decreasing audit quality and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due to the impairment of auditor independence, as well as positive effect of increasing audit quality, accounting information quality and tax service quality due to the knowledge spillover between audit service and tax services. An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 firm's decision on purchase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be made by the factors caus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What is mentioned above implies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can be looked over more generally, by performing an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firms' purchase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But there have been only a few empirical studies on this issue. Based on these points, this study examines for the Korean listed compani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firms to purchase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Test results say that firms with strong governance or high tax and operational complexity are more likely to purchase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and that firms are more likely to purchase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when their auditor's independence level or knowledge spillover capacity is high. These results support that a firm's decision on purchase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is made by judging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on the whole.

<Key words> Auditor-Provided Tax Services, Auditor Independence, Knowledge Spillover, Corporate Governance, Tax and Operating Complexity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Inha University

** Ph.D. Student, School of Business, Inha University